

# 보험설계에 도움줄 수 있는 위험관리 기대

## 1. 머리말

오늘날 우리들이 경영하고 있는 방법의 화재보험 운영 제도가 등장하기 전에는 독일에서 15 세기에 화재 공제조합이 생겨서 인간의 사망이나 화재 사고 발생시에 재산적 부조를 목적으로 한 상부상조의 형태로 길드에 의한 사회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다.

그 후 1591년에 독일의 함부르크 지방에서 화재 보험 조합(Hamburger Feuerkontrakt)이 형성되어 현재의 보험 회사와 한 걸음 더 접근한 조직의 운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과 거의 같은 보험업이 형성된 것은 1661년에 런던대화(London 大火)가 발생한 후 화재보험의 필요를 다수의 영국인들이 인식하면서 부터인데 Nicholas Barbon이라는 치과 의사가 화재 보험업을 영위한데 기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화재보험 사업은 다른 특정 보험과는 달리 가계와 기업에 관련된 전국민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그 기원에서도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업 영역이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3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서울등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의 4층 이상의 건물, 국유물건, 교육시설, 백



이 상 화  
〈보험감독원 손해보험부 부장〉

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 등의 특수건물에 대하여 그 소유주로 하여금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 2. 특수건물의 보험 담보 필요성

당시에 대형 화재 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 복구와 인명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관련 보험가입 법률을 입법하였고, 또한 동 법에서 손해보험 회사에게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설립하게 하였다.

동 법에서는 그 운용 비용을 출

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업무로는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소화설비에 따른 화재보험 요율할인 등급의 사정,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 및 계몽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화보험회는 설립 당시부터 손해 보험의 모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수건물의 보험 인수 문제는 손해보험회사가 공동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이 인수 업무를 화보험회가 위임받아 대행하여 왔다. 그러나 보험 시장의 국제화와 개방 추세에 따라 우리 보험 산업의 자율 경쟁체제를 강화 확립함과 아울러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보험 공동 인수를 단계적 조치에 의해 점차 해체하여 각 손해보험 회사에서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일시에 특수물건을 해체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즉,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89년 10월 1일에 특수물건중 계약 건수는 많은데 비하여 규모와 위험이 적은 4층건물, 소규모의 공장, 학교 등을 공동 인수물건에서 1단계로 해체하였고, 1991년 4월 1일에 2단계 해체 조치가 있었으며 금년 10월 1일에 3단계 해체 조치로 해체 업무를 끝내고 국공유 건물, 방위산업체 건물은 해체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표〉 화재보험 POOL(공동인수) 해체 현황

(단위 : 천건, %, 억원, '91.3.31 현재)

| 단계           | 해체시기     | 해체내용        |               | 해체물건   |
|--------------|----------|-------------|---------------|--|
|              |          | 건수(율)       | 보험료(율)        |  |
| 1 단계<br>기초치  | '89.10.1 | 34(64.2)    | 70 (13.4)     | • 4층 건물, 소규모 공장(1~2천㎡), 학교, 강습소, 음식점, 아파트, 촬영소 |
| 2 단계<br>기초치  | '91.4.1  | 12(22.6)    | 118 (22.6)    | • 5층 건물, 공장(2~3천㎡), 시장, 호텔, 병원 옥내판매장, 공연장      |
| 3 단계<br>(계획) | '92.10.1 | 7 (13.2)    | 335 (64.0)    | • 6층 이상 건물, 대규모 공장(3천㎡이상)                      |
| 계            |          | * 53(100.0) | * 523 (100.0) |  |

\* 국유/방산 619 건, 보험료 37 억원이 제외된 숫자임

〈4층 이상 건물 화재보험 가입 현황〉

(단위 : 건, %)

| 구분            | '89.9.30 현재        |                    |                | '91.3.31 현재        |                    |                |
|---------------|--------------------|--------------------|----------------|--------------------|--------------------|----------------|
|               | 대상건수               | 가입건수               | 가입률            | 대상건수               | 가입건수               | 가입률            |
| 특수건물총계        | 40,951             | 33,349             | 81.4           | 54,079             | 36,826             | 68.1           |
| 4층 이상<br>(4층) | 28,082<br>(18,356) | 22,117<br>(13,966) | 78.8<br>(76.1) | 40,707<br>(25,562) | 25,075<br>(13,669) | 61.6<br>(53.4) |
| (5층)          | ( 6,780)           | ( 5,456)           | (80.0)         | (10,557)           | ( 7,223)           | (68.4)         |
| (6층)          | ( 1,849)           | ( 1,660)           | (89.8)         | ( 2,879)           | ( 2,525)           | (87.7)         |
| (7층이상)        | ( 1,097)           | ( 1,035)           | (94.3)         | ( 1,709)           | ( 1,658)           | (97.0)         |

의무 보험으로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특수건물은 그 용도 면에서 이용자들이 다수인 병원, 호텔, 극장, 학교, 백화점, 공동주택 등으로 화재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의 자력으로는 원상 회복이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수건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방재 설비의 설치 상태에 대한 조사와 소화 설비의 확인에 대한 검사 활동을 행함으로써 화재 사고 예방을 도모

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재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화재 발생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을지라도 화재 사고는 예고없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때를 대비하여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 담보를 해두어 사후에라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건물의 출입자, 근무자 또는 거주인들이 입게되는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수건물이 화재보험을 체결하는 경우에 신체손해 배상책임담보 특약을

첨부해야 하는데,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당해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특수건물의 소유자와 동거하는 직계 가족, 또는 법인인 경우에 이거나 업무 집행기관)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안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이들 화재 사고로 인하여 입게될 인명 피해를 배상할 책임에 대비하여 법률에서 강제하지 않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크다.

지난 해에 개정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금액을 현실에 접근하도록 조정하여 화재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종전의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부상의 경우에는 최고 4백만원에서 최고 8백만원으로 높였고, 새로이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하는 후유장해의 보상금액을 배상하도록 신설된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 것이다.

3. 특수건물의 위험관리와 보험 설계

우리의 일상 사회 활동에서 부딪치는 재난중의 하나로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화재 위험중에서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의무 보험으로 가입을 강제하여야 할 정도로 법률에서 중요한 보험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비록 특수건물에 관해 보험에 강제 가입을 법적으로 요

구하고 있을지라도 실제의 보험가입금액이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된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보상받는 피보험자가 만족할 만큼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행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강제 보험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외국에서도 우리의 화보험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일을 하는 기구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기관들이 보험 회사에 의해 설립되었고 예산은 회원들의 회비 또는 분담금이나 수수료와 같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주요 방재기관으로는 미국에서는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 : 설립년도 1896년), Industrial Risk Insurers(IRI : 1890), Risk and Insurance Man-

agement Society(RIMS : 1931), 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AIA : 1964),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UL : 1894) 등이 있고, 영국에서 International Oil Insurers(IOI : 1975), Fire Research Station (FRS : 1889) 등이 있으며, 독일, 일본, 스웨덴 등에도 대소의 방재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부보 물건의 안전점검, 관련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클레임에 대한 정보 제공, 방재 관련서적, 조사 보고서의 발간, 안전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 방재 연구소의 운영, 방재 기구의 시험 기준 제정, 전자제 소화설비 등에 대한 안전시험과 연구 등을 수행한다.

화보험회의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 활동은 이 기관의 설립 취지에서 본다면 부대 업무에 불과하고, 본래의 기능은 화재로 인한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에 있으므로 화재 위험관리가 화보험회에서 수행할 주요 기능에 속한다고 하겠다.

위험관리에 대해 학문적인 차원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이 미국에서도 60년대 전후이므로 아직도 성숙된 연구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나 조사 연구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급속히 연구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특수건물을 중심으로 화재 위험관리에 대해서 실무 차원의 방재 활동이 수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관리 활동이 화재 위험에만 머물지 말고 다른 많은 위험들에까지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화재 이외의 위험들에 관해서도 위험관리를 행함으로써 다른 보험 종목에 대해 효과적인 보험 설계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화보험회는 특수건물의 화





재 위험에 한정된 방재 활동을 통해 위험관리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화재 위험 예방을 위한 사전적 안전점검, 소화설비에 대한 점검 활동을 통한 보험료 할인을 결정, 소화설비의 개량자금 대여, 소방시설 용역 점검, 대형 건물의 위험 상태 확인 등으로 화재 위험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로 방재시험연구소의 활동 영역 확대와 더불어 위험관리 서비스가 확산되어야 하겠다.

방재시험연구소는 설립된 지 5년 남짓되나 종합 방재 기관으로 발돋움하여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시험연구소의 역할은 화재 위험에 대비한 방재 활동에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위험관리를 위해 연구 활동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상황

을 감안하여 화재 위험을 비롯하여 다양한 많은 종류의 위험들에 대해 연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법 개발과 서비스 활동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위험관리에 관한 전문 기술과 연구성과를 기업 등에 확산 보급하여야 하겠다.

화보험회사나 방재시험연구소 자체 요원들의 기업 과편을 통해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산업 사회의 양적·질적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과거와 같은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으므로 당해 산업체에 대해 위험관리 기법의 이전을 통하여 전문가를 양성시켜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험관리 활동의 영역 확대와 기술 보급으로 담보할 수 있는 보험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은 물론 보험 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들의 효과는 보험 회사와 보험 가입자 양당사자들 모두에게 혜택이 부여되므로 보험의 보급 확대와 함께 보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피보험자의 보험에 대한 인식을 좋은 방향으로 높여주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4. 맺는 말

화보험회의 방재 활동에 쏟은 20년 가까운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화재보험의 손해율을 지속적으로 인하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하였는바, 손해 보험 산업의 성장 발전과 동시에 보험 요율의 계속적 인하를 통해 보험 가입자에게도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 물론 이와 같은 효과가 화보험회의 위험관리 역할에 의해 보험 관계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혜택을 부여한 요인이라고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화보험회가 발족하기 이전에도 대한재보공사에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위험관리와 클레임 서비스 업무를 소수의 인력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방재활동에 의한 위험관리가 기관 단위로 수행된 것은 화보험회의 발족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3단계 공동 인수의 해체가 실시된 후에는 화보험회의 설립 취지의 근간이 되는 방재 활동과 안전점검에 치중할 수 있게 되므로 오히려 전문적 방재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㉞)